

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4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1.

발의자 : 황주홍 · 이찬열 · 백재현

정인화 · 김관영 · 유성엽

윤영일 · 윤소하 · 전혜숙

박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민법」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, 「민법」이 개정(법률 제10429호, 2011. 3. 7. 공포, 2013. 7. 1. 시행)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.

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(안 제14조제3항제1호).

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제1호 중 “금치산자”를 “피성년후견인”으로, “한정치산자”를 “피한정후견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조합원 등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<u>금치산자</u>, <u>한정치산자</u> 또는 미성년자</p> <p>2. · 3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14조(조합원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피성년후견인</u> – <u>피한정후견인</u> -----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